

2022.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결과 공개

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공개합니다.

2022. 9.

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

○ 심사일 : 2022. 9. 22.

○ 심사내역

퇴직 당시		취업업체		심사결과	결정사유
소속 기관명	직위 또는 직급 (퇴직시기)	기관명(직위)	취업 (예정)일		
인천광역시 연수구	지방서기관 (2022년 6월)	(주)쌍용개발 (관리과장)	2022년 7월	취업 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인천교통공사	상임이사 (2021년 10월)	인천교통공사 (사장)	2022년 9월	취업승인	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
인천광역시 강화군	지방기술서기관 (2020년 12월)	강화군시설관리공단 (강화군행복센터장)	2022년 10월	취업승인	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
				업무취급 승인 (법 제17조제2항 제1호·제5호)	법 제18조의2 제3항

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유형 】

- **취업 가능** :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·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
- **취업 제한** :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·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
- **취업승인** :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(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
- **취업불승인** :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
- **업무취급승인** : 심사신청자가 재직 중 취업예정기관과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나, 해당업무 취급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가능

【 관련 법령 】

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(업무관련성 판단근거)

-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- ②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③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④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⑤ 공사,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-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- ⑧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(시행령 제32조제2항)

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(취업승인 사유)

-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
-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·폐지,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면직된 경우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④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(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)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
-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
-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,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성이 적은 경우
-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·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성이 적은 경우
-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·자격증·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성이 적은 경우